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. 9. 5 선고 2018가단86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5.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. 3. 14. 접수 제48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의 주장에는 B이 무자력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

보인다)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임현준

별지